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3회 임시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2. 3. 14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2. 2. 28.
- 회부일 : 2022. 3. 4. (의안번호 : 22-24 )

## 2. 개정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정보공개법)의 개정(2021.12.23.)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비율을 “과반수” 에서 “3분의 2 로” 확대하고, 내부위원을 “행정관리국장, 감사담당관, 민원여권과장” 에서 “행정관리국장, 민원여권과장” 으로 축소(안 제11조)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자체적으로 설치·운영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삭제(안 제3조)
-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정비 (안 제6조)

- 행정정보의 공표 →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
-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(안 제12조~제19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 
제7조, 제12조, 제12조의2
- 「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#### 5. 검토보고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정보공개법)이 2021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내용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 - (안 제11조)에서는 법 제12조 제3항1)을 준용하여 정보공개심

---

1)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, 지리적 여건,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(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·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회는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

④ 심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20. 12.

의회 외부 전문가 의무 위촉 비율을 기존 “과반수” 에서 “3분의 2 이상” 로 확대하고, 내부위원을 “행정관리국장, 감사담당관, 민원여권과장” 에서 “행정관리국장, 민원여권과장” 으로 축소하는 내용임.

- (안 제3조)에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자체적으로 설치·운영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삭제 하는 내용임.
- (안 제6조)에서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<sup>2)</sup>을 “행정정보의 공표” 에서 “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” 로 상위법 내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함.
- (안 제12조~제19조)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및 체계 전반을 정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

22.>

-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  -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3. 8. 6.]
- 2) 제7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,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12. 22.>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 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 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  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-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(2021.12.23.)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내용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상위 법령과의 조화 및 조례 활용성 강화 등의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됨.

- 다만,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에 대한 구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가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, 집행기관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을 적극 위촉하여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.